

1. 개정이유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 지하수오염유발시설 확대, 관측정 설치방법 및 검사주기 등을 개선하여 지하수오염원에 대한 감시 강화
 -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에 대한 조치절차 구체화로 지하수 오염정화 이행관리 강화

2. 주요내용

- 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확대 등(안 제4조의 별표2)
 -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단계에서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포함되도록 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4조, 제15조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거나 토양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시설도 추가
- 나.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검사주기 등 개선(안 제6조의 별표3)
 -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설치하는 관측정 설치수량 및 수질검사 주기 등을 폐기물관리법과 부합되도록 조정
 -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수질측정 주기를 토양정화 전은 분기 1회, 토양정화 완료 후에는 반기 1회로 구분 설정
- 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에 대한 조치절차 구체화(안 제7조의2)
 -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제출명령 시 제출기한을 6개월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 범위 안에서 1회 연장
 - 조치명령 이행시 이행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치명령완료

보고서를 제출

라. 지하수 용도별 수질기준을 현실화(안 제11조의 별표4)

- 유기인에 대한 지하수 수질기준을 먹는물 수질기준과 같게 하고, 비음용(농어업용수, 공업용수) 지하수의 pH는 먹는샘물 수질기준으로 조정

마. 지하수 수질검사 주기 및 절차 보완(안 제12조 및 제13조)

- 수질 검사주기를 준공확인증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 또는 3년마다 실시도록 하여 분기별 수질검사 쏠림현상을 방지
- 수질검사기관이 지하수를 직접 시료채수가 어려운 도서·산간지역 등 지자체장이 공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지역 공무원이 시료를 채수하여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별표 3 제1호나목(2)”을 “별표 3 제3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중 “조치명령완료통보서”를 각각 “조치명령완료보고서”로, 같은 항 중 “통보”를 “보고”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 · 군수는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조사 ·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별표 4 제2호”를 “별표 4”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석유계총탄화수소”를 “석유계총탄화수소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절차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 · 군수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로부터 영 제 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제출을 명할때에는 6 개월의 범위안에서 그 제출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간내에

부득이하게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로 한정하여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정화업자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가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영 제2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명할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간내에 부득이하게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로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사업은 2년의 범위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공사의 규모·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정화조치를 못한 자에 대하여는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영 제26조의3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조치명령완료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치명령완료보고서를 제출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는 그 보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치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제7조제2항의 오염지하수정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영 제26조의3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이 종료되기 3일전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을 “날”로 한다.

제13조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도서·산간지역 등에 소재하여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의한 시료채취가 어렵다고 시장·군수가 공고하는 지역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료채취 및 봉인 등을 한 후에 수질검사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질검사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시료채취를 하는 공무원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개설한 수질분야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별표 2 제2호가목 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에 따라 오염된 정화

조치명령을 받게 된 시설”을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4조, 제15조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거나 토양정밀조사 명령 없이 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받게 된 시설”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목 “조치명령완료통보서”를 “조치명령완료보고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하수법 시행령」 제26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을 “「지하수법 시행령」 제26조 · 제26조의3제2항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 · 제7조의2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별표 2 제2호가목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부터 최초로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4조, 제15조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부터 적용한다. 다만,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4조, 제15조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명령 없이 토양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이 규칙 시행 이후부터 최초로 토양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의 조치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2제1항 및 제2항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영 제26조의 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의2제3항 내지 제6항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하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제4조 관련)

1. 지하수보전구역에 설치된 다음의 시설

- 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2. 지하수보전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다음의 시설

- 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4조, 제15조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거나 토양정밀조사 명령 없이 토양정화조치 명령을 받게 된 시설
-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
-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비고: 지하수치료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지하수 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서 제외한다.

[별표 3]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및 수질측정의 주기·방법(제6조제1항 관련)

1. 별표 2 제1호 및 제2호나목·다목 시설의 관측정 설치방법 등

가. 관측정의 설치방법

지 점	관측정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경계선에서 지하수 주 흐름의 상류지점 으로서 오염이 발생되기 이전의 대표적인 지하수의 수질을 채취 · 분석할 수 있는 지점	1 이상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경계선에서 지하수 주 흐름의 하류지 점으로서 오염물질이 주위 지하수층으로 이동하는 것을 즉시 탐지할 수 있는 지점	2 이상

비고 :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지하수오염유발 시설의 규모, 오염물질의 성상에 따라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수를 증감 할 수 있다. 다만, 지하수오염관측정은 지하수 주 흐름방향의 상류지점 및 하류지점에 각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 수질 측정의 방법·주기

(1) 지하수 수질 측정방법

(가) 수질측정은 영 제30조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 등을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나) 측정항목별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1.1.1-트리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릴렌에 대한 측정방법은 같은 법 제6조제1항제6호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2) 지하수 수질 측정주기

지하수위·전기전도도·수온 및 별표 4에 따른 지하수의 생활용수 수질기준 항목과 해당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서 배출이 예상되는 오염물질은 관측정 설치완료일로부터 분기 1회 이상 측정한다.

2. 별표 2 제2호가목 시설의 관측정 설치방법 등

가. 관측정의 설치방법

지 점	관측정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경계선에서 지하수 주 흐름의 상류지점으로서 오염이 발생하기 이전의 대표적인 지하수의 수질을 채취·분석할 수 있는 지점	1 이상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경계선에서 지하수 주 흐름의 하류지점으로서 오염물질이 주위 지하수층으로 이동하는 것을 즉시 탐지할 수 있는 지점	1 이상

비고

1.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규모, 오염물질의 성상에 따라 오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해당 부지 내 주변 지하수 관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지하수 오염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된 관측정은 대체할 수 없다.
2.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게 된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의 관리자는 정밀조사 완료 전까지, 토양정밀조사 명령 없이 토양정화조치 명령을 받게 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관리자는 토양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측정을 설치하여 지하수오염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지하수 수질측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관측정을 원상 복구할 수 있다.

나. 지하수 수질측정의 방법 · 주기

(1) 지하수 수질 측정방법

- (가) 수질측정은 영 제30조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 등을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 (나) 측정항목별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1.1.1-트리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벤젠, 툴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에 대한 측정방법은 같은 법 제6조제1항제6호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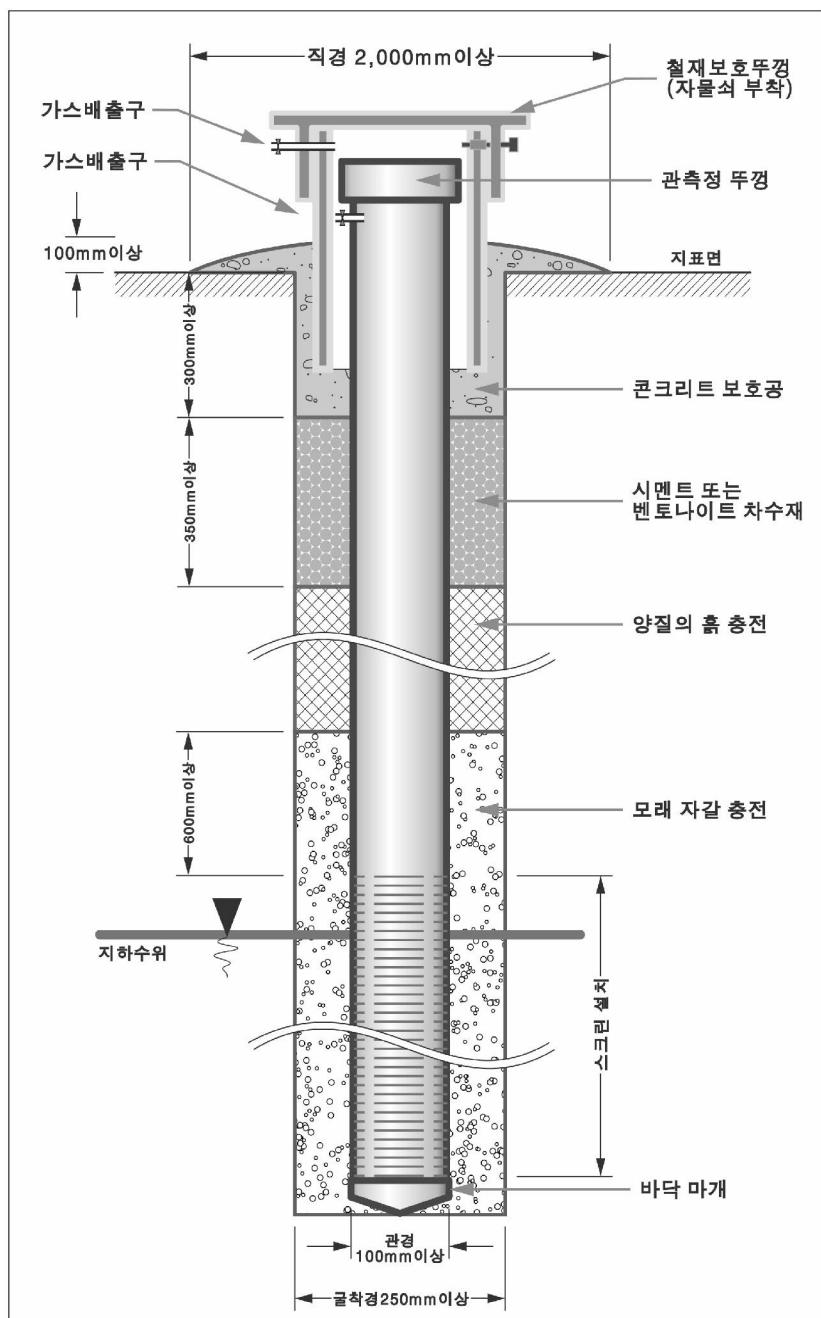
(2) 지하수 수질 측정주기

- (가) 지하수위·수온·수소이온농도·전기전도도 및 별표 4 제2호에 따른 지하수 수질기준 항목 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4조, 제15조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명령 또는 토양정화조치 명령을 받게 된 해당 오염물질을 관측정 설치완료일로부터 분기 1회 이상 측정한다.
- (나) 지하수 수질 측정결과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 기준 이내로 2회 연속 조사된 경우에는 토양정화공사를 완료한 후 추후 1년 동안 반기 1회 측정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는 1년을 경과하여도 해당 오염물질이 오염지하수정화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관측정 수질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측정주기를 반기 또는 분기 1회 이상 측정하도록 연장 할 수 있다.
- (다) 지하수 수질 측정결과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하수 정화조치가 완료된 이후 1년 동안 분기 1회 측정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는 1년이 경과한 이후에 해당 오염물질이 오염지하수정화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관측정 수질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측정주기를 반기 또는 분기 1회 이상 측정하도록 연장 할 수 있다.

(라) 오염토양 굴착 등 정화공사로 인하여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양정화 공사기간 동안에 당해 분기의 관측정 수질 측정을 면제 할 수 있다.

3. 관측정의 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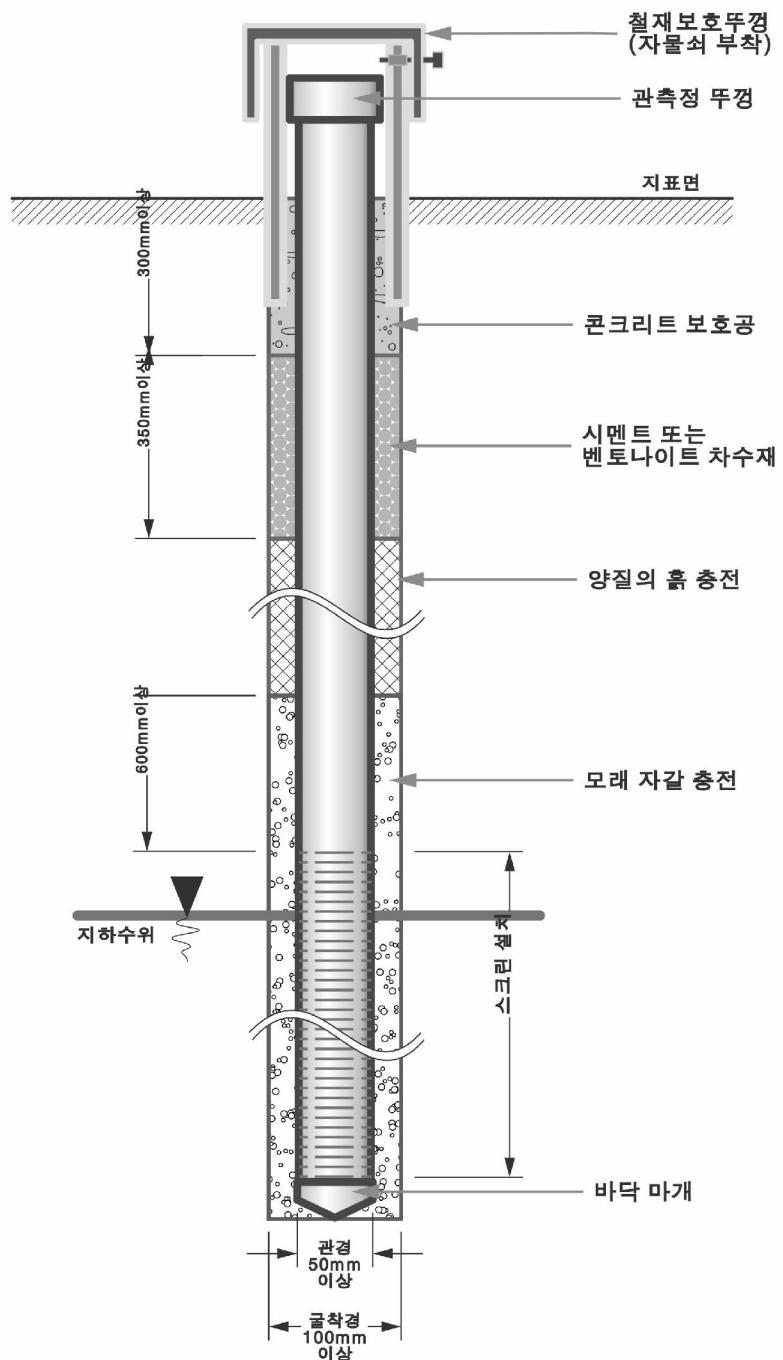
가. 별표 2 제1호 및 제2호나목·다목 시설에 설치되는 관측정



비고

1. 관측정 재질 : 스테인레스스틸, 테프론 등의 재질로서 중금속(유기용제 포함) 등에 부식 또는 흡착되지 않는 내구성이 있는 재질
2. 콘크리트 보호공 : 외부로부터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지표면위로 두께가 100 mm이상, 반경 1,000 mm이상 되도록 설치

나. 별표 2 제2호가목 시설에 설치되는 관측정



비고

1. 관측정 재질 : 스테인레스스틸, 테프론 등의 재질로서 중금속(유기용제 포함) 등에 부식 또는 흡착되지 않는 내구성이 있는 재질
2. 관측정은 토양오염 부위를 고려하여 지하수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심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3. 관측정을 설치하는 현장여건에 따라 지중 매립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이 관측정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관리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현장사진 및 시공도면 등 자료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4]

지하수의 수질기준(제11조 관련)

1.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다만, 「지하수법」 제20조제2항 등에 따라 수질개선을 위하여 정수 처리를 실시한 경우에만 소독제 및 소독제 부산물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2. 지하수를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공업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단위: mg/L)

항목		이용목적별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공업용수
일반 오염 물질 (4개)	수소이온농도(pH)	4.5 ~ 9.5	4.5 ~ 9.5	4.5 ~ 9.5	
	총대장균군	5,000 이하 (군수/100mL)	-	-	
	질산성질소	20 이하	20 이하	40 이하	
	염소이온	250 이하	250 이하	500 이하	
특정 유해 물질 (19개)	카드뮴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비소	0.05 이하	0.05 이하	0.1 이하	
	시안	0.01 이하	0.01 이하	0.2 이하	
	수은	0.001 이하	0.001 이하	0.001 이하	
	다이아지논	0.02 이하	0.02 이하	0.02 이하	
	파라티온	0.06 이하	0.06 이하	0.06 이하	
	이피엔	0.0005 이하	0.0005 이하	0.0005 이하	
	펜토에이트	0.0005 이하	0.0005 이하	0.0005 이하	
	메틸-에스-디메톤	0.0005 이하	0.0005 이하	0.0005 이하	
	페놀	0.005 이하	0.005 이하	0.01 이하	
	납	0.1 이하	0.1 이하	0.2 이하	
	크롬	0.05 이하	0.05 이하	0.1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이하	0.03 이하	0.06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1,1,1-트리클로로에탄	0.15 이하	0.3 이하	0.5 이하	
	벤젠	0.015 이하	-	-	
	톨루엔	1 이하	-	-	
	에틸벤젠	0.45 이하	-	-	
	크실렌	0.75 이하	-	-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염소이온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어업용수

나. 지하수의 이용 목적상 염소이온의 농도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다. 해수침입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염소이온 농도가 증가한 경우

2.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가 생활용수의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경우에는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조치명령 완료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통보인	상호(명칭)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통보내용	시설명		
	조치명령 완료내용		
	조치명령 완료일		
시공업체	업체명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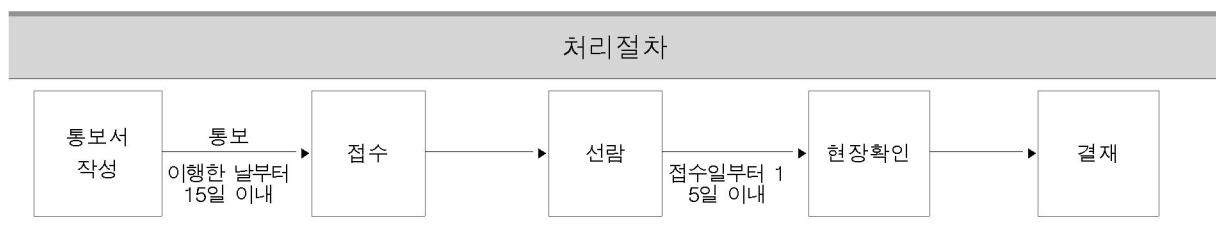
「지하수법 시행령」 제26조 · 제26조의3제2항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5항 ·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二〇一〇年

통보인 (서명 또는 인)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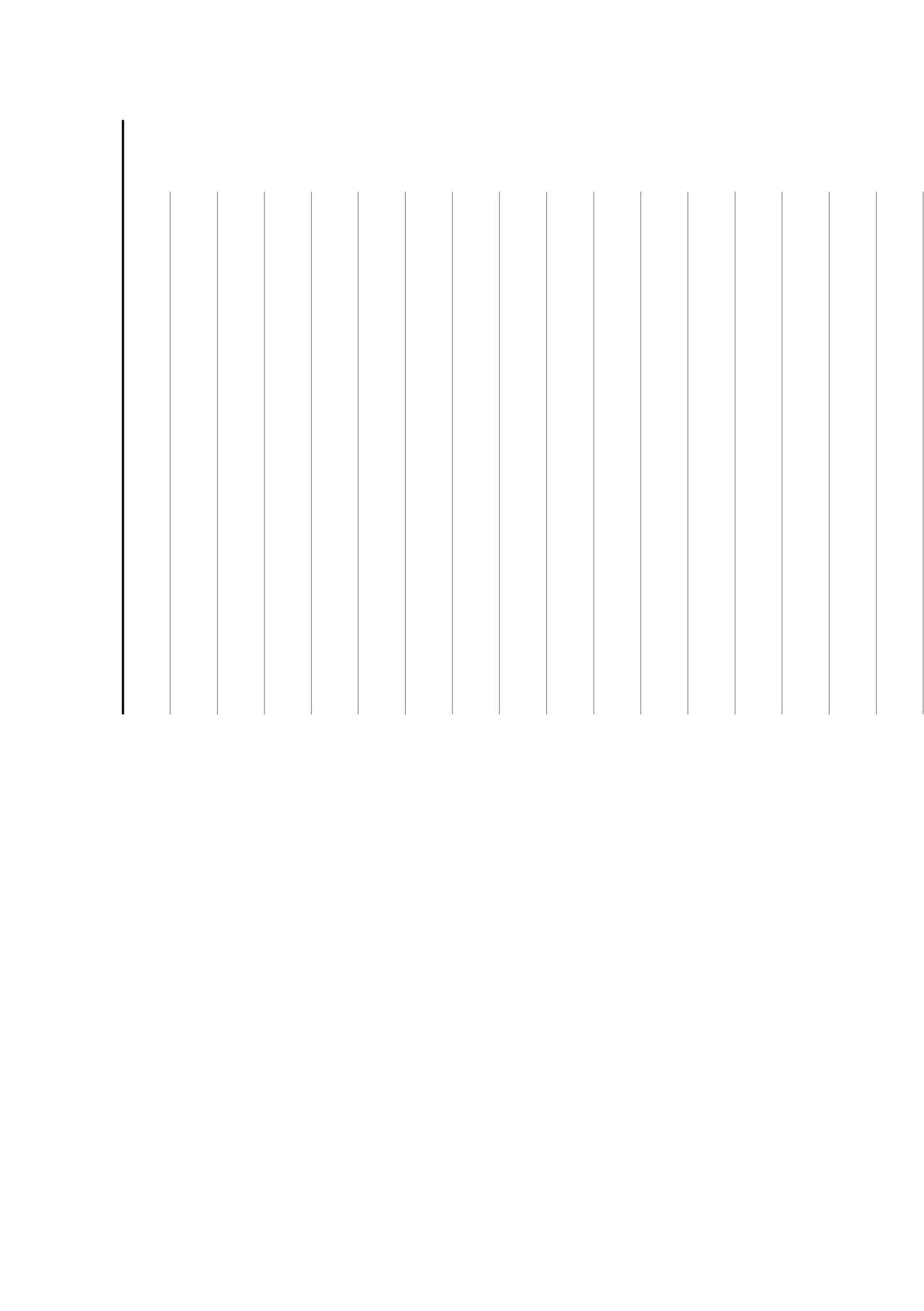
첨부서류	1. 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2. 현장사진	없음



210mm × 297mm [백상지 80g/m²]



--	--	--	--	--	--	--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조치명령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오염관측정을 설치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는 <u>별표 3 제1호나목(2)</u> 에 따라 지하수오염관측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조치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별표 3 제3호나목</u> ----- ----- ----- ----- -----. ③ · ④ (생 략) ⑤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u>조치명령완료통보서</u>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5항에 따른 <u>조치명령완료통보서</u> 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u>통보</u>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⑥ ----- ----- <u>조치명령완료보고서</u> ----- ----- ----- ----- -----. 1. · 2. (현행과 같음) ⑥ ----- ----- <u>조치명령완료보고서</u> ----- ----- <u>보고</u> ----- ----- ----- ----- -----.

	--.
제5조(지하수오염 조치결과의 신고) (생 략)	제5조(지하수오염 조치결과의 신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조사·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오염지하수정화기준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특정유해물질이 <u>별표 4 제2호</u> 의 생활용수의 특정유해물질에 관한 수질기준 이내일 것 2. <u>석유계총탄화수소</u> 가 리터당 1.5밀리그램 이하일 것 ② (생 략) ③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영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	제7조(오염지하수정화기준 등) ①----- ----- -----. 1. ----- <u>별표 4</u> ----- ----- ----- ----- 2. <u>석유계총탄화수소류</u> ----- ----- 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수영향조사기관 또는 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정화업자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절차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로부터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안에서 그 제출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간 내에 부득이하게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로 한정하여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정화업자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가 지하수오염유발시

설관리자에게 영 제2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명할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간내에 부득이하게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로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사업은 2년의 범위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공사의 규모·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내에 정화조치를 못한 자에 대하여는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영 제26조의3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조치명령완료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치명령완료보고서를 제출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는 그

보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제7조제
2항의 오염지하수정화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
6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⑥ 영 제26조의3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이행기간내에 조치명령을 완
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행
기간이 종료되기 3일전까지 지
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
수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수질검사의 주기) ① 영
제2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14조
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을 받
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 2. (생 략)
② (생 략)

제12조(수질검사의 주기) ① ---

----- 날-----

----.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수질검사의 절차) ① ~
④ (생 략)

<신 설>

제13조(수질검사의 절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도서·산간지역 등에 소재하여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의한 시료
채취가 어렵다고 시장·군수가
공고하는 지역은 소속 공무원으
로 하여금 시료채취 및 봉인 등
을 한 후에 수질검사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질검사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라 시료채취를 하
는 공무원은 국립환경인력개발
원이 개설한 수질분야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 교육과정을 이수하
여야 한다.